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77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최형두·김종민·김기현

김성원 · 서천호 · 김예지

엄태영 · 이종욱 · 박상웅

김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(기술능력, 소재지, 대표자 등),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,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.

또한,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·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.

이에,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(안 제14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3(공사업의 교육)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(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 이수자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)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·기준·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6조제3항 중 "행정처분의 기준"을 "행정처분·감경의 기준"으로 한다.

제69조제3항 중 "제38조제1항"을 "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"으로 한다. 제78조제1항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4조의3(공사업의 교육) ① 제1
	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
	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
	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
	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
	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
	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
	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
	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
	임원 1명 이상(대표이사를 포
	함한다)이 교육을 이수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	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
	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
	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
	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
	경우 교육 이수자(법인인 경우
	에는 법인으로 한다)에 대하여
	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
	<u>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
	육의 방법·기준·절차 및 교

- 제66조(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<u>행정처분</u> 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·② (생 략)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 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 - 1. ~ 3의2. (생 략) <신 설>

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				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	
제66조(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)				
①・② (현행과 같음)				
③				
행정처분				
·감경의 기준				
제6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				
·② (현행과 같음)				
③				
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련				
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				
 한 업무와 제38조제1항				
<u>.</u>				
제78조(과태료) ①				
<u>.</u>				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				
3의3.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				
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				

<u> 3의3.</u> (생 략)	<u>3의4.</u> (현행 제3호의3과 같음)
4. ~ 9. (생 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